

■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1]

중앙상담지원기관의 시설기준 등(제5조제1항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시설기준

- 1) 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
- 2) 책상, 전화기, 컴퓨터,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이 있을 것. 다만,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나. 설비기준

- 1) 전화·온라인·모바일 상담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
- 2)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녹취기, 카메라 등 적합한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출 것

다. 인력기준: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하며, 팀장을 포함한 직원은 전임으로서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.

라. 조직기준: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

2. 운영기준

가. 중앙상담지원기관은 각 지역의 지역상담기관과 상시소통체계를 갖춰야 한다.

나. 직원 채용 시 전문상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하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.

다.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은 조직, 인사, 급여,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기관을 운영해야 하며,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- 1) 기관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
- 2)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장, 팀장, 직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
- 3)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